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4. 1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578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

나. 상정의결

-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2. 4. 14.)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은승일)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제137조 및 제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하고, 수수료 징수와 관련이 없는 제136조(사용료)는 삭제(안 제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비(안 제6조제1항제8호)

-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현행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누락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장애인 수준 이상의 복지를 지원(안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별첨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3.4. ~ 2022.3.24.) 결과, 안 제6조제1항제13호가 일반인이 법령 해석이 어려운 조문으로 법령을 단순화하여 수정하고자 함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1.4.6.)로 개정되어 정비하려는 것임.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가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장애인 수준 이상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를」 제73조의2를 삭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p><b>&lt;국가유공자&gt;</b>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 순직(전몰)군경, 전상(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p>
<p><b>&lt;보훈보상대상자&gt;</b>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p>
<p><b>&lt;지원대상자&gt;</b>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개편 법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이 지원대상으로서 기득권 보호          ※ 대상유형 :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p>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만, 사용료<sup>1)</sup>와 수수료<sup>2)</sup>는 법적근거 및 성격이 달라 관련 없는 사용료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제1항제8호에서는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신설하는 같은 항 제12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9.15. 제정되어 제2조<sup>3)</sup>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

1)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임. 신설하는 같은 항 제13호는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제73조의2를 2011.9.15. 삭제하였으나 부칙 제19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임.

### 〈법률개정 조문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p><b>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b>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p> <p><b>5. 순직군경(殉職軍警):</b>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p>	<p><b>제73조의2</b> 삭제 &lt;2011.9.15.&gt;</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b>부 칙</b></p> <p><b>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b>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p>

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8
----------	-----

제출년월일 : 2022. 4.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세무관리과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제137조 및 제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하고, 수수료 징수와 관련이 없는 제136조(사용료)는 삭제(안 제1조)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비(안 제6조제1항제8호)

다.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현행 제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누락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장애인 수준 이상의 복지를 지원 (안 제6조 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2.3.4. ~ 2022.3.24.) 결과,

안 제6조제1항제13호가 일반인이 법령 해석이 어려운 조문으로 법령을 단순화하여 수정하고자 함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를 삭제하고, “제137조 및 제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전 등록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p> <p>1. ~ 7. (생략)</p> <p>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p> <p>9. ~ 11. (생략)</p> <p><u>&lt;신설&gt;</u></p>	<p>제1조(목적) ----- 제154조 및 제156조-----</p> <p>-----</p> <p>-----</p> <p>-----</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p> <p>-----</p> <p>-----</p> <p>----- 제13호까지-----</p> <p>-----</p> <p>-----</p> <p>-----</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p> <p>-----</p> <p>-----</p> <p>9. ~ 11. (현행과 같음)</p> <p>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p>

<신 설>

② ~ ④ (생 략)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전 등록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83호, 2021. 1. 5., 일부개정]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부 칙<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

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법 제78조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않음

### 3. 미첨부 사유

-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 4. 작성자

- 세무관리과 지방세무주사보 박효정(02-3423-5633)